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19

광 주 고 등 법 원

전 주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(전주)2015누43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[redacted]교회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. 4. 29. 선고 2014구합1120 판결

변 론 종 결 2015. 10. 12.

판 결 선 고 2015. 11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2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전 398㎡에 관한 취득세, 등록세 각 3,893,760원, 농어촌특별세 389,370원, 지방교육세 714,750원, 같은 동 [redacted] 외 1필지 임야 4,172㎡에 관한 취득세, 등록세 각 43,804,800원, 농어촌특별세 4,380,480원, 교육세 8,040,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19

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8행 "같은 동 [redacted] 임야 4,539㎡"를 "같은 동 [redacted] 임야 1,439㎡"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.

「⑤ 원고는 2011. 6.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용될 조경수를 매입하여 식재하는 등 육묘장을 조성하고 잔디를 식재하였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익산시 소유의 도로를 폐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나,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의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이후 2012. 말경까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취해진 사실도 없다.

3)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교회신축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는데, 그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만 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있었음에도 취득세 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19

을 추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이 이 사건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기존에 그러한 피고의 선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」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노정희

판사 김주경

판사 김용민